

#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1341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 의 자 : 이개호 · 박지원 · 허성무  
이병진 · 정진욱 · 이정문  
황명선 · 부승찬 · 박수현  
민형배 의원(10인)

### 제안이유

농어업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의 기간 산업이자 생명 산업으로서 국토의 환경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전통문화보존 등 경제적·문화적·환경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갈수록 진전되는 수입 개방화로 인하여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전체 산업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기반 약화로 인하여 농어촌은 공동체 해체 위기에 놓여있으며 농어업인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음.

무엇보다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와 교육환경의 악화는 생활환경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청년들의 농어촌 이탈 현상을 심화시켜 농어촌 인구 감소 현상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업·농어촌 회생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여 농어촌 공동체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공동체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농어촌기본소득은 연간 240만원 이상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도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 사.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 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에 지원을 중지하도록 하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등에는 지원 자격을 상실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등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6조).
- 차.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7조).
- 카.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의 결정, 지원 및 환수 등 운영·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공동체 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농어촌 주민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 기준일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 대상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에게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이 결정된 자에게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5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한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원이 정지된 기간에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농어촌기본소득은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 화폐로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 신청) 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을 받으려는 농어촌주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 절차·방법, 구비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질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자격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자의 가택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농어촌기

본소득 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의 결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지원 자격의 발생·변경·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여부를 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자격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대리수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지원금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압류 등의 금지) ①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지원의 중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 되는 날을 지원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5.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 자격 상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7조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6조(농어촌기본소득의 환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사유로 환수하는 때에는 지급한 지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14조에 따라 지원이 중지된 기간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농어촌기본소득이 잘못 지원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지원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7조(변경 신고) 제11조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그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14조에 따른 지원 중지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효)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의 권리와 제18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1조(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자의 결정, 지원 및 환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전산망의 운영 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